

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 공고

파주읍 백석리 일원에 위치한 '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' 예정구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며,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 년 7월 3일
파 주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

- 가. 위치 :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50-1번지 일원
- 나. 면적 : 510,361㎡ (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)

2. 제한사유 (변경없음)

- 가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」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으로 발전종합계획에 기반영된 지역이며, 「2030 파주도시기본계획」 상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임.
- 나.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,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, 계획적·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
3. 제한기간 (변경)

- 가. 기 정 : 2023. 07. 28. ~ 2026. 07. 27. (고시일로부터 3년간)
- 나. 변 경 : 2023. 07. 28. ~ 2028. 07. 27. (2년 연장)
※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·고시할 경우 제외

4. 제한대상 행위 (변경 없음)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
- 나. 제한대상 제외 행위
 - 1)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
 - 2)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 건축물
 - 3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
 - 4)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(신고)
 - 5)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 - 6)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

5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

- 가. 열람기간 : 2026. 7. 3. ~ 2026. 7. 17. 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- 나. 열람장소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, 파주읍 행정복지센터
- 다. 제출방법 :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
- 라. 제출내용 :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
※ 본 공람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(게재 생략)

7. 기타사항 :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기업지원과(☎031-940-53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